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363272

2021년 2월

석사학위논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 수 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ocial Worker's Human Rights Sensitivity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 수 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희 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 수 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임수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용 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 성 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박 희 서 (인)

2020년 11월

조 선 대 학 교 정 책 대 학 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1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6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 6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 ····· 6
제2절 인권의 동향 ····· 8
1. 제1세대 인권 ····· 8
2. 제2세대 인권 ····· 8
3. 제3세대 인권 ····· 8
제3절 인권감수성 ····· 11
1. 인권감수성의 개념 ····· 11
2.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 ····· 12
제4절 인권의식 ····· 15
1. 인권의식의 개념 ····· 1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인권의식 구성요소 ····· 15
제5절 인권교육 ····· 18
1. 인권교육 개념 ····· 18
2. 인권교육 주요 내용 ····· 19
제6절 선행연구 ····· 26
1. 선행연구의 동향 ····· 26
2. 선행연구의 평가 ····· 28

제 3 장 연구설계 ····· 29
제1절 연구모형 ····· 29
제2절 연구가설 ····· 30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30
1. 인권감수성 ····· 30
2. 인권의식 ····· 32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3

제 4 장 실증분석 ····· 34
제1절 표본의 특성 ····· 34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34
2. 인권교육 경험 실태 ····· 36
제2절 측정도구 검증 ····· 37
1. 타당도 검증 ····· 37
2. 신뢰도 검증 ····· 39
제3절 기술통계 ····· 4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기술통계량 ····· 40
2. 변수의 특성별 차이분석 ····· 41
3. 상관관계 분석 ····· 54
제4절 가설의 검증 ····· 55
1.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 55
2.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 57

제 5장 결론 ····· 64
제1절 분석결과의 논의 ····· 64
1. 가설검증 결과 ····· 64
2.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 6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66
제3절 본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 67

참 고 문 헌 ····· 69
부 록 ····· 7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2-1> 인권의 동향 ····· 10
<표 3-1> 인권감수성 문항구성 ····· 32
<표 3-2> 인권의식의 문항구성 ····· 33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 36
<표 4-2> 인권교육 경험 ····· 37
<표 4-3> 인권교육에 대한 요인분석 ····· 39
<표 4-4> 신뢰도 분석 ····· 40
<표 4-5> 기술통계 ····· 41
<표 4-6>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 43
<표 4-7>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 44
<표 4-8>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 45
<표 4-9>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 47
<표 4-10> 직위에 따른 차이분석 ····· 49
<표 4-11> 업무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 50
<표 4-12> 사회복지 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 52
<표 4-13> 현 근무지 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 54
<표 4-14> 상관관계 ····· 55
<표 4-15>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 ····· 56
<표 4-16>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 ····· 57
<표 4-17>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 57
<표 4-18>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 ····· 58
<표 4-19> 인권감수성과 평등권 간 인간교육의 조절효과 ····· 59
<표 4-20> 인권감수성과 자유권 간 인간교육의 조절효과 ····· 61
<표 4-21> 인권감수성과 생존권 간 인간교육의 조절효과 ····· 62
<표 4-22> 인권감수성과 사회권 간 인간교육의 조절효과 ····· 64
<표 4-23> 가설검증 결과 ····· 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목차

<그림 3-1> 연구 모형 ····· 30
<그림 4-1> 인권감수성과 평등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 60
<그림 4-2> 인권감수성과 생존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 6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Worker's Human Rights Sensitivity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Im, Soo Hyeon
Advisor : Prof. Park, Hwiw Seo,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n human rights awareness. And it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duc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purpose is to present basic data for reinforcing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the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of work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as a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n the right to equality and survival of human right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sciousness, it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plays a controlling role i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equal rights, right to live) of worker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owever,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did not play a regulating role i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freedom and social rights).

Based on these research conclusion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necessary because it is said that the major difference i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issues is the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disabled,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eed companie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ep-by-step and systematic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disability and to actively educat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alyz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orker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by developing a measuring tool for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indicators currently developed in Korea only with the human rights situ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disabl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plans so that specific and empirical studies on variables that affect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can be applied to the welfare field by activating human rights-related research.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인간들이 갖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무를 포함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 및 학대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감금, 폭행(성폭행), 강제노동, 지역사회교류단절 등과 시설운영측면에서 폐쇄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재발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선주, 2015). 인권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인 인권감수성은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요하다(조은아, 2018).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들과 종사자가 24시간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은 이용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장승진, 2017).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로 설계되어 있고 안전을 이유로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일종의 서비스 수혜자로 여기는 경향이 과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로서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때문에 권위·집단·통제적인 실천 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인권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수법의 문제, 교육의 실효성 문제 등과 같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인권교육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인권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권교육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인권교육의 경험유무는 인권의식 및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하늬, 2014). 인권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국제인권수준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둘째, 인간과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존중 등의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인성을 강화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부족하다.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과정으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은아, 2018). 하지만 인권 교육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특정분야에 한정된 교재, 인권강사 자체 교안에 의한 의존 등의 문제점과 인권교육내용의 반복과 형식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신재은, 2015). 인권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일회성 강연식 교육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식위주의 교육 밖에 되지 못한다(오세희 외, 2015).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인권은 다루기에 민감한 주제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이나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박수희, 2016).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은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지각하는 수준으로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같이 느끼며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스스로 지각하는 수준으로(조윤정, 2006),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간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인권의 관점에서 지각하는 감성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의식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시설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이 장애인옹호행동 또는 학대행동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중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동시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영향관계에서 인권교육경험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장애인학대에 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실태 및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인권교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인권교육경험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가설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였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그리고 추론적인 이론의 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와 인권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모형을 정립하였다.

셋째,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 속에서 인권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정도가 장애인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넷째, 조절변수로는 인권교육의 실시빈도, 전문담당자 유무, 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에 따라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에 따른 연구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고, 총 5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해,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인권교육 등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설계로 연구의 모형, 연구의 가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으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측정도구의 검증, 기술통계, 가설의 검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분석결과의 논의, 연구의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그리고 인권교육 사이의 영향관계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에 대하여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서적, 선행연구문헌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그리고 인권교육 사이의 영향관계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설계하였다. 설문은 2020년 9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종사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설문지는 총 139부를 배포했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많아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4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135부를 대상으로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배경과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인권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위계적 회귀분석은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변수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장애인복지시설을 강순옥(2002)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의 저해를 받고 있는 사람 심신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곤란한 자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물리적 심리적인 안정 등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갖추고 개개인의 사람에 대하여 적합한 원조역할을 하는 시설'이라 정의하였다(강순옥, 2002).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적인 복지제도 내에서의 복지서비스 일부분으로서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사회적 핸디캡을 겪는 이들이 경제, 가족적 기능의 결여 등으로 스스로 자립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교육·치료·재활상의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건물,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시설운영 조직을 총칭한다(지현민, 20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용형태에 따라 경제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스스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소를 통해 보호하는 거주시설과 장애인들의 통원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의료, 직업, 교육, 사회, 심리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되어진다(이미정, 2015).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 비하여 시설의 유형도 다양하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연령의 폭도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개인의 처한 상황과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의 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잘 대처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조은아, 2018).

첫째, 부모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은 본인의 가정을 떠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재활교사와 복지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둘째, 중재자의 마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과 관련 부모, 간호사, 의사, 자원봉사자 및 물리치료사 등 다른 조직 또는 사람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개입해야 한다. 셋째, 대변자의 마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들의 입장과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대리인이 되어 환경, 주장, 교섭을 조직하여야 한다. 넷째, 중개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촉진자의 마음으로 감정을 환기하고, 표현을 격려하며, 장애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목표달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교사의 마음으로 변화된 행동이나 신변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이미정, 201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목적으로 봉사와 헌신을 주요 덕목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보호자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제외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본인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하는 감정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인권의 동향

1. 제1세대 인권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자유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신체구속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정권, 사생활 보호,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과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 권리라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제1세대 인권의 핵심은 정치권과 통상 시민권으로 정리한다. 제1세대 인권의 기원은 18세기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이다(Galtung, 1994; Boibbio, 1996; 국가인권위원회, 2006 재인용).

2. 제2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에서 확장된 개인적인 삶의 질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한 필요한 사회보장, 여가를 누릴 권리, 교육, 공정한 노동의 대가 등 국가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각각의 자아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입과 역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서 19세기와 20세기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및 집단운동에서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3. 제3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은 제1, 2세대 인권의 개인적인 권리실현과 권리보호와는 달리 집단적인 권리실현으로 개인의 뚜렷한 혜택보다는 전 국민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집단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오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지 않는 환경에서 숨을 쉬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청정한 자연을 누리며 살 권리, 안정된 사회에서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3세대 인권은 집단투쟁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식민지 국민의 사회·환경, 독립투쟁 운동가들의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항거 및 환경수호 투쟁 등을 통하여 20세기에 와서야 인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와 같이 인권의 이념과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서양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존재하였다. 각각의 세대에서 확연한 인권사상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세대를 지날수록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인권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1> 인권의 동향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세대의 명칭	정치권과 공민권	문화·사회·경제적 권리	집합적 권리
인권의 기원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녹색이념, 개발학, 경제학
예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학대받지 않은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투표·집회·언론의 자유 등	사회보장, 적정 소득, 고용, 의료, 주거, 교육 등에 관한 권리 등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사회 조화, 경제성장 혜택, 경제개발 성장에 대한 권리 등
행위자	난민사업, 인권감시단, 국제사면위원회, 법률 상담소	민간의 시장복지, 제3섹터, 복지국가	그린피스. 지역사회개발계획, 경제개발기구
지배적 전문적	법률	사회복지 제도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교도소 개혁, 조사자, 보호시설, 난민사업, 옹호 등	조사연구, 정책개발과 옹호, 복지국가 운영,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개발 : 개인·정신적,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

출처 : 짐 아이프, 김형식(200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인권감수성

1. 인권감수성의 개념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은 개념적 포괄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이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의 포괄적 의미에서 인권의식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인권 침해상황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동반한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자영, 2012; 조윤정, 2006).

인권의식은 주로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인권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공감능력보다는 인지적인 판단 능력에 한정하여 인권의식을 논의하고 있다(이승미, 2000). 따라서 인권의식은 인권교육의 결과물로서 인권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생되는 일연의 심리적 과정으로 인권감수성과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변소현·김봉선, 2016). 즉, 인권의식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심리과정이 인권감수성이고 공감과 정서의 영역이나 인권에 대한 동기화적 측면에서도 인권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변소현·김봉선, 2016).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인권과 관련한 상황을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정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은 시설이용자들의 인권존중 및 조직의 가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은아, 2018).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권감수성은 심리적 측면, 실천적·사회제도 측면으로 정의된다(문용린 외, 2002; 홍선미 외, 2017; 김형수 2010; 조윤정, 2006; 장승진 2017).

우선 심리적 측면의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 해석하고, 그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관련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과정이다(문용린 외, 2002). 인권상황에서 인권문제로 인지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석되지 못하면 인권 옹호적 행동을 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인권 옹호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이규란, 2012). 일상생활 속에 경험하는 다양한 일이나 사건 등에서도 인권적인 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다. 이는 인권의식의 근원이자 인권옹호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다(김형수, 2010). 실천적·사회제도적 측면의 인권감수성은 인권적인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인권이 침해 상황에서 진행되는 책임을 자신에게 귀인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 정의적·행동의 실천적인 개념이다(조윤정, 2006). 즉, 실천적·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인권감수성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관행, 제도 등을 인권관점에서 인식하는 감성을 의미하고 있다(홍선미 외, 2017). 이는 사회의 부적절한관행이나 사회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장승진, 2017).

이러한 인권감수성의 개념은 인권에 관한 태도나 기술, 지식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기존의 인권의식과는 차별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는 Rest(1983)의 도덕적민감성이론과 Volker(1984)의 도덕적 민감성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조은하, 2018). 인간의 도덕적 행동과정을 인권 관점에서 해석한 Rest(1983)의 도덕적 행동과정에서는 인간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네 가지 요인을 설명했다. 첫째, 인권감수성과정(인권상황을 지각 후 해석할 수 있는 과정), 둘째 인권에 관한 판단력과정(어떠한 행동을 인권과 결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과정), 셋째, 인권에 향한 동기과정(타 가치와 비교 후 인권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동기과정), 넷째, 인권옹호 행동과정으로 이러한 네 가지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인권감수성이 형성되어 진다.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도덕적 상황으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각 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 보다 중요하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중요한 요소이다(조은하, 2018).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여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정서적 요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도덕적 민감성은 역할채택(role-taking)능력과 공감(empathy)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도덕적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게 된다(김혜진, 2009). Volker(1984) 상담가들의 도덕민감성 측정을 위해 비보와 동료들(Bebeauet al., 1985)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덕민감성 검사(Moral Sensitivity RatingScale)척도를 개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1) 상황지각 능력

인지론자들은 인권옹호행동과 도덕적 행동의 동기로서 이성(인지)의 역할과 이성적 판단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과 같은 여러 권리가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추론능력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중요하다(강지영, 2002). 이러한 인지론적 관점에서, 상황지각 능력은 상황을 인권 문제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순간에 어떤 효과를 개체에 미치는 영향의 총체 또는 환경적 조건들이다(장승진, 2017).

인권 옹호행동이 일어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인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인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매일 일상 속에서 본인의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결과지각 능력

결과지각 능력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으로 인간이 개인, 집단, 기관, 사회 등과의 상호관계를 인지하고, 원인과 결과 관계에 대한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과 본인의 행동이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또한, 전문적 실천행위를 제시하는 윤리강령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법령에 대한 인지가 요구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지각능력은 자신이 타고난 여러 감각기관을 기초로 하여 자신 및 타인을 둘러싼 환경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승진, 2017). 결과 지각능력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또한 타인의 정서적 인식능력도 포함된다(김충희, 2004). 결과지각은 본인의 인권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인권문제에도 진지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3) 책임지각 능력

도덕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람은 상황들 속에서 중요사실들을 지각할 수 있고, 그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결과를 지각 할 수 있으며, 딜레마 해결을 위한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국가인권위위휜, 2002). 또한, 책임에 따른 성립은 행위자가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과 행위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요구한다(장승진, 2017). 하지만 사회구성 및 인간관계는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 더욱더 인권감수성의 정도가 중요하다(김충희, 2004).

위의 구성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개개인의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 능력에서부터 책임지각과 결과지각이 서로 겹치게 되는 접점에서 인권감수성의 수준 정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각활동 하나만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닌, 전체의 인권구성요소가 동등하게 향상될 때 인권감수성 역시 향상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인권의식

1. 인권의식 개념

의식이란 사전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물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는 지적작용이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집단적 또는 개인적인 견해, 사상 또는 감정이다. 김윤태는 인권의식을 인간이 갖는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적·정서적一행동적 태도라고 하였으며(김윤태, 2012), 박상준·임태승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에 대한 판단력, 인권보호 태도와 행위 성향 등 인권에 대한 복합적인 정신 상태와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박상준·임태승, 2010).

인권이란 개념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법 안에서는 기본권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라게 되는 것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떤 국가나 법체계가 권리로 인정하는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인정되어지는 실정법 이전의 권리를 의미한다(전청자, 2019). 이와 같이 인권이란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인간과 조직 사회 국가 등이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도덕적 권리의 일종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통하여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세세하게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지고 있다.

2. 인권의식 구성요소

인권의식은 행동적 요소,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행동적 요소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으로 구성된다. 인권판단력과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 친화적 태도와 인권에 대한 신념 등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지적 요소는 사람들이 인권에 빗대어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 활용하는 지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정의적 요소는 인권에 대한 태도와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인권에 빗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선택 및 행동하도록 작동하는 정서적 요인이다. 또한 인권의식의 3가지는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기능은 인권 관련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박상준·임태승, 2010).

인권의식의 개념 중 구성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Rest(1983)는 도덕적 행동을 위하여 4가지 요소인 도덕 판단력, 도덕 민감성, 도덕적 품성, 도덕적 동기화를 바탕으로 인권의식의 구성요소를 다루고 있다. 첫째, 도덕 민감성은 인권감수성의 과정 중 하나로 상황에 대해 지각 및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도덕 판단력은 인권에 대한 판단력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행동이 인권을 기준으로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동기화는 인권에 대한 동기화로 다른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인권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다. 넷째, 인권 행동 실천력으로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을 이야기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재인용).

또한 Gets의 연구는 사람들의 인권의식은 도덕 추론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원리적 도덕 추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로서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김자영,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인권의식의 개념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는 인권문제가 제시된 상황을 인권에 관련된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들을 측정하고 있다(전청자, 2019). 이는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인권인식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유용하지만 인권에 관련된 실천 유형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김경미, 2013). 인권의식은 인권문제와 관련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지판단력이 중요하고(이승미, 2000), 공감적 정서성향도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역사 속에서 인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인권의 구성요소도 추가되어 왔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절정에 달했던 18세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시작으로 인권이 개념화되었다. 그 후로 인권은 소극적 인권에서 적극적 인권으로 발전하였고, 억압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충족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를 충족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인권유형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흥수, 2014).

첫째, 평등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상향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권은 독립된 기본권인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예로 종교, 사회적 신분, 성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격의 자유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행동의 자유권, 성별, 장애, 나이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자유권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헌법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외부와 소통의 자유, 자기결정권, 종교 자유, 사생활 보호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이 해당한다.

셋째, 생존권은 인간으로서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의 권리, 의식주 및 생활의 권리, 의료 및 건강의 권리, 주거안전의 권리 등이 해당된다.

넷째, 사회권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가족권, 사회보장권 등이 해당된다. 사회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속에서 사회통합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다섯째, 참정권은 정치권이라고도 하며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수 있는 권리로, 표현의 자유, 선거권·피선거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자유투표할 권리, 피선거권자로 투표에 참여할 권리 등이 해당된다.

제5절 인권교육

1. 인권교육 개념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인권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수법의 문제, 교육의 실효성 문제 등과 같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인권교육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인권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권교육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인권교육의 경험유무는 인권의식 및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하늬, 2014). 인권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국제인권수준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둘째, 인간과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존중 등의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인성을 강화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부족하다.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과정으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은아, 2018). 하지만 인권 교육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특정분야에 한정된 교재, 인권강사 자체 교안에 의한 의존 등의 문제점과 인권교육내용의 반복과 형식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신재은, 2015). 인권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일회성 강연식 교육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식위주의 교육 밖에 되지 못한다(오세희 외, 2015).

인권교육은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특성을 지닌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서, 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실천지향적인 교육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또한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직까지 인권을 적절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 줄 수 있는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소정, 2012). 즉, 인권교육은 개인적 인권에 대한 인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나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인권이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김소정, 2012).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14)에서는 인권교육을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권에 대한 지식들로 인권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 등에 대한 인지정도이다.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감정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의 공간, 자각, 존중 등이다. 세 번째는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행동의지로 이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향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하지만 현재 실행 중인 인권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 원리가 잘 채택되어 있어도 교수·학습방법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지식전달로 그치기 쉽다. 인권 교육은 학습자의 활동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 주요 내용

인권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인권은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인권은 “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를 가리킨다. rights of man에서 man이 사물이나 자연과 구별되는 ‘형식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미'에서 '인간'을 가리킨다면 human rights에서의 human은 인간으로서 본질을 강조하는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권은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김수현, 2019).

둘째,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을 지녀야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의 인간과 모든 장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연령, 직업, 종교,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소유하게 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여야 하며,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

셋째,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역사에서 인권의 차별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투쟁하여 얻어낸 결과물이 바로 인권이다.

넷째,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인권 보장의 권리는 근대 이후 국가는 일차적 의무를 부여받았다. 국민주권의 원리인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의 목적이자 존재이유로서 국가에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은 인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은 근대 이후 핵심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김수현, 2019).

인권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 및 개념 등은 시대의 변화 혹은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 해석이 적용되고 달라지며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인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언'이 준비되고 있던 1948년 당시에도 인권에 대한 큰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하위개념과 세부항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인권 교육'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제기구의 선언문, 협약, 권고문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국제협약 제13조,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 제78-82항의 인권교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비엔나 선언의 제33, 34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조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이란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형성을 통하여 보편적 인권문화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훈련, 보급 그리고 정보전달의 노력이라고 정리하면서, 학습자에게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권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UN의 선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교육'이 '인권'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과 역할을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제공,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격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이승학, 2017).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 인권교육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인권이란 무엇인지 아는 것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인권관련 정책, 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 문건들, 인권의 역사 등을 통해 권리 침해와 자신이 가진 기본적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인권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게 하고 학습자 스스로 인권을 내재화하며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어떠한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 등을 마주쳤을 때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단체와의 연계, 인간관계와 사고능력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이나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인권교육을 할 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의 차이와 사고 및 삶의 방식으로 인해 차별대우받지 않아야하고, 민주적인 논의 및 합의를 통해 평화롭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 과정 자체로 인권을 완성해 나갈 수 있고,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1) 유아 및 아동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의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며,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과 제23조 2에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대해 각각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함양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전지영, 2015).

유야 및 아동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 중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정보전달위주의 교육 및 교육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유아 인권교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목표가 단순한 인권관련 지식 형성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가치와 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김숙자·김현정, 2008). 또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는 교육 내용 또한 인권에 관한 지식으로 한정되기 보다는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김숙자·김현정, 200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내용에서도 인권 이해하기,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 등의 지식적 내용도 다루기는 하나 신뢰와 사회적 존중, 갈등해결 하기, 차별에 대처하기,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신뢰 쌓기 및 학급규칙 정하기 등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인숙, 2011)의 프로그램구성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인권에 대한 이론,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인권원칙, 그리고 현장적용을 위한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을 정리하면, 4개의 영역이 각각의 교육 자료와 교육 모듈로 구성되어지고 교육 모듈은 각 10회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참가자들의 필요와 교육환경에 따라 필요한 회기 또는 활동을 재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2) 교육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서 높지만, 인권교육 측면에서 볼 때 전문화된 교육의 미흡으로 체계화된 계획의 부족, 교육 참가율 저조, 인권수준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다섯 가지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권의식수준은 타 영역에 비해 양호하였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인권에 대한 체계인 지식과 내면화가 부족하였다(김영란, 2005).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간혹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사회참여활동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적 대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김영란, 2005).

교사는 체계적으로 받은 인권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관리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며, 비인권적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교사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 교육 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검토해보면, 인권관련 강좌는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헌법, 사회학개론, 사회문제론 등에서 간헐적으로 소개 되고 있는 실정이다(임경수, 2012). 또한 초・중등 교사의 신규임용예정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수과정은 '중등 인권 존중의 생활지도'의 단 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지 과정에 불과하고 초등의 경우에는 인권 및 인권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강좌가 개설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었으며, 자격연수의 경우도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서도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강좌가 단 하나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유병열, 2012). 이는 초・중등 교사 자격연수과정에서 진행된 인권보호 및 인권옹호 관련 연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인권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요구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연수기회는 전무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실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첫째, 교사들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구성. 둘째, 세부적인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인권교육 실시. 셋째,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넷째, 승진체계와 인사의 개혁, 다섯째, 학부모와 교사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사업안내의 노인복지법 제39조6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의 장은 학대예방을 하기 위하여 종사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과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노인복지법, 2019).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역시 기관특성에 맞는 교육 매뉴얼의 보급과 형식적·단기적 교육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훈련의 기회 및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설노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서비스를 지향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인권교육은 단기적·형식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 인권교육은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김민경 외, 2016).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 거주노인들에게 제공되어 지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검증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을 종사자에게 체계적·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김혜련·정명숙, 2017).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과 실천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종사자들이 인권 관점에 바탕을 둔 노인복지를 실천 할 수 있는 교육 및 인권교육교재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기존 노인 인권의 연구나 지침들이 인권의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과정이 어떠한 인권 영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많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4)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교육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장 종사자 거주자(이용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에 관한 인권교육을 연2회 8시간이상(내부 강사에 의한 교육은 4시간에 한해 인정)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시설 내 환경인 교육에 대한 의무적 조항과 예산적인 문제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에 그치고자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의 토론 형태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소그룹 교육 방식을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권상황에 따른 인지하며, 적용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강사 자격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양성과정 수료자 및 인권교육 관계자, 기타 위와 준하는 인권 관련 경력 및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강사의 개별적인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시설현황에 맞는 인권강사를 양성해야 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문용린 외, 2017)에서도 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을 적합한 수준으로 적정한 교수법을 구사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강사자격기준과 경험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각 관련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종사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점으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지침에는 8시간의무교육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변소현·김봉선, 2016). 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권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의무적인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인권침해 사례를 중점으로 상황지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편중되어있다. 이에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지각 뿐 아니라 결과지각 능력, 책임지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인권 침해사례가 사회복지사, 기관, 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요구되지만, 현 인권교육의 방향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체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장바론, 2016).

장애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한 세 개의 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교재 목차를 보면 인권규정과 조직구성,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그리고 인권의 개념 정리, 시설보호와 인권의 중요성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과 사례를 나열하고 있어 거주시설의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부족하고 인권교육에 따른 적절한 교수법, 교육상황에 맞는 강의 내용을 적정하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을 위한 인권 지원활동 가이드북, 2011).

제6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동향

이연우(2011)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농업종사 지역주민과 군 단위 주민도 인권감수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홍보의 필요성과 다양한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순임(2011)은 인권 관련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과 연관지어 지각하게 되는 책임지각을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인권 침해 인지와 노인종합복지 안팎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미래(2012)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인권감수성의 결과지각 능력 점수가 아동인권 인식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필(2012)은 학생특성별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이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과 관련이 있는 권리를 다루는 항목들에 대한 수준은 낮게 나왔다. 그러나 자신과 연관성이 없는 권리를 다루는 항목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식하며 이에 맞는 행실을 갖출 수 있도록 행동적·인지·정의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효경(2012)은 정신보건간호사 인권감수성 훈련이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인권감수성훈련을 통하여 비교집단인 실험군과 비실험군으로 2주간의 훈련 실시 결과,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이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얻었다(김동선, 2014). 하지만 훈련이 종료된 후 인권감수성태도가 유지되지 못해 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수현(2019)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권감수성의 하위 영역 중 상황지각 능력은 독립변수(교수법, 교육내용, 교육만족도)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상황지각 능력은 인권교육과 관계없이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타인의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인권상황에 따른 상황지각 영역의 교육보다는 타인의 정서인지능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향상교육과 인권옹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근무태도확립을 위한 인권옹호행동 매뉴얼 작성, 이용인들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자신의 역할 알기 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업실천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선행연구의 평가

사회복지 각 분야별 선행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준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의 정보전달에 그치는 교육과 형식적인 진행,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강사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인권강사의 역량은 인권교육의 질과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인권강사 인력풀 확보를 위해 강사의 전문성, 강사들이 배출됨에 따라 인권강사들은 통합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없이 강사의 능력에 의존한 강의 진행, 내용전달식 교육,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감수성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권교육에 있어 인권강사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인권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성이 있는 인권강사의 교육이 결과지각 능력과 책임지각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직무적용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수현(201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권교육의 내용 중 태도와 가치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방향이 종사자의 개별적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으로 진행됨으로써 종사자에게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직무에 적용함에 있어 본인의 책임에 대한 거부나 책임 전가 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인권 딜레마 상황에서 근무자가 쉽게 대처하기 힘든 시설의 환경 및 체계 마련의 부족 등의 현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에는 인권감수성(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인권의식(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인권교육(인권교육 실시빈도, 인권교육 전문담장자 유무, 교육필요성,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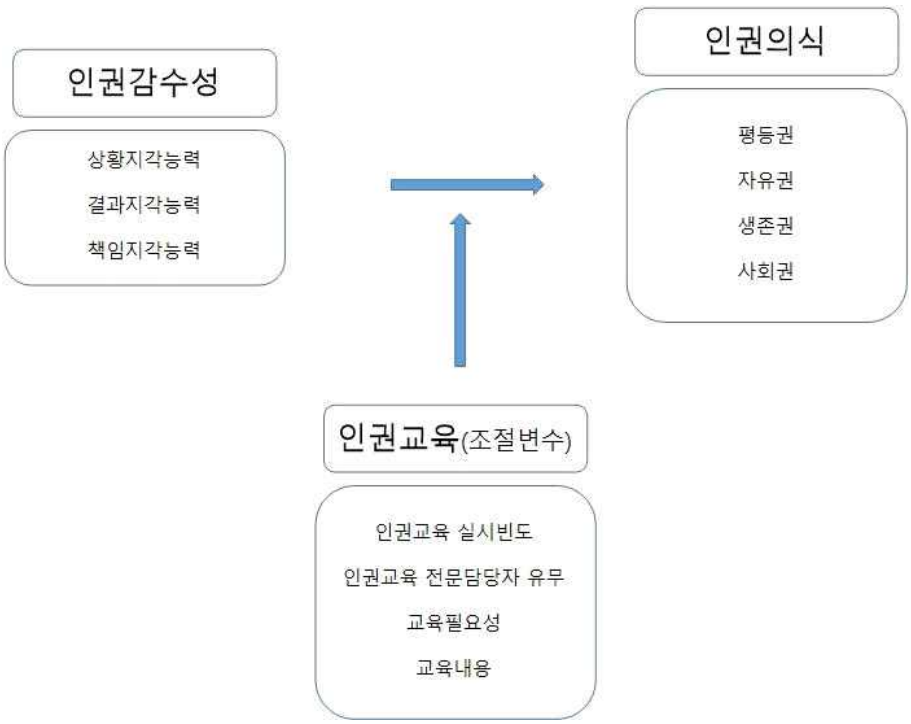

<그림 3-1> 연구모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인권감수성은 평등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인권감수성은 자유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인권감수성은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인권감수성은 사회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2-1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2-2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2-3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2-4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인권감수성

본 연구는 인권감수성의 조사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2002)를 측정도구로 채택하였다.

본 검사는 인권의 문제가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일화를 읽고 다른 가치를 나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는 문항과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 인권적 문항의 점수가 인권을 옹호하는 점수보다 낮게 나올수록 인권감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검사문항에서 Ⅰ번 질문이 상황에 대한 지각, Ⅱ번 질문이 결과에 대한 지각, Ⅲ번 질문이 책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게 된다. 각 질문에 한 문항 중 하나는 인권감수성과 상관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이고 하나는 인권감수성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인권감수성과 상관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평정이 인권감수성을 재는 문항에 대한 평정보다 낮은 반응만 선택하여 그 결과에 해당하는 수를 종합하여 인권감수성의 원점수를 도출한다.

예로, 인권감수성 문항에 '③ 중요하지 않다'를 선택하고, 비인권감수성 문항에 '④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비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수치가 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수치보다 높으므로 0점을 주도록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가치 문항과 인권문항에 대한 반응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떠한 점수를 산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각 일화 당 세 개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 0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일화는 총 5개이므로 설문 대상자는 최소 0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얻을 수 있다.

<표 3-1>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하위영역	문항 수(n)	문항 번호
인권감수성	상황지각	5문항	1, 7, 13, 19, 25
	결과지각	5문항	3, 9, 15, 21, 27
	책임지각	5문항	5, 11, 17, 23, 29
	전체	15문항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인권의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교육평가도구 및 실행지침(2008)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선행연구들의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참정권 2문항, 사회권 7문항, 생존권 11문항, 자유권 15문항, 평등권 5문항으로 총 4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 인권의식의 문항구성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5	1, 2, 3, 19, 20
자유권	사생활보호권,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입·퇴소의 자유	5	4, 5, 6, 7, 8
생존권	신체 및 정신적 안정의 권리, 의식주 생활의 권리, 의료 및 건강	5	9, 10, 11, 12, 13
사회권	교육권, 노동권 및 경제권, 가족권	5	14, 15, 16, 17, 18
합 계		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 중인 13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결측값이 존재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5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배경과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인권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변수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증분석을 통한 표본의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본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135명으로 성별은 남자 56명(41.5%), 여자 79명(58.5%)이며, 연령은 20대 15명(11.1%), 30대 48명(35.6%), 40대 47명(34.8%), 50대 25명(18.5%)으로 30대와 40대가 7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여부는 기혼 75명(55.6%), 미혼 58명(43.0%), 이혼 2명(1.5%)이며, 최종학력은 중학교 3명(2.2%), 전문대학 17명(12.6%), 대학교 98명(72.6%), 대학원 17명(12.6%)으로 대학교가 가장 많았다. 직위는 원장과 사무국장이 각각 4명(3.0%), 부장, 팀장 21명(15.6%), 사회복지사 77명(57.0%), 기타 29명(21.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근무 형태는 정규직 93명(68.9%), 계약직 40명(29.6%), 기타 2명(1.5%)으로 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 영역 근무 기간은 3년 이하 33명(24.4%), 5년 이하 30명(22.2%), 10년 미만 44명(32.6%), 10년 이상 28명(20.7%)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현 근무지 근무 기간은 3년 이하 67명(49.6%), 5년 이하 33명(24.4%), 10년 미만 29명(21.5%), 10년 이상 6명(4.4%)으로 3년 이하의 근무 기간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용		빈도(명)	비율(%)
영역		135	100.0
성별	남성	56	41.5
	여성	79	58.5
연령	20대	15	11.1
	30대	48	35.6
	40대	47	34.8
	50대	25	18.5
결혼 여부	기혼	75	55.6
	미혼	58	43.0
	이혼	2	1.5
최종학력	중학교	3	2.2
	전문대학	17	12.6
	대학교	98	72.6
	대학원	17	12.6
직위	원장	4	3.0
	사무국장	4	3.0
	부장, 팀장	21	15.6
	사회복지사	77	57.0
	기타	29	21.5
근무 형태	정규직	93	68.9
	계약직	40	29.6
	기타	2	1.5
사회복지 근무 기간	3년 이하	33	24.4
	5년 이하	30	22.2
	10년 미만	44	32.6
	10년 이상	28	20.7
현 근무지 근무 기간	3년 이하	67	49.6
	5년 이하	33	24.4
	10년 미만	29	21.5
	10년 이상	6	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인권교육 경험 실태

인권교육 경험 실태를 파악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실시 빈도는 월 1회 1명(0.7%), 반기별 1회 134명(99.3%)이며, 장애인 인권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 79명(58.5%), 필요하다 46명(34.1%), 보통이다 10명(7.4%)이며, 장애인 인권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 방안, 장애인 인권 옹호 실천 방안, 장애인 학대와 학대 유형, 인권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순으로 나왔으며, 주된 교수 방법은 강의식 25명(18.5%), 혼합식 110명(81.5%)으로 혼합식 방법이 가장 많았다.

<표 4-2> 인권교육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35	100.0
빈도	월 1회	1	.7
	반기별 1회	134	99.3
담당자 유무	있다	135	100.0
	없다	-	-
인권교육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79	58.5
	필요하다	46	34.1
	보통이다	10	7.4
	필요 없다	-	-
	전혀 필요 없다	-	-
인권교육 필요 내용	인권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19	14.1
	장애인 학대와 학대 유형	23	17.0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 방안	51	37.8
	장애인 인권옹호 실천 방안	42	31.1
교수 방법	강의식	25	18.5
	혼합식(강의식+토론식)	110	81.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측정도구 검증

1. 타당도 검증

인권의식에 대한 측정도구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서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측정지표의 측정결과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우수명, 2006). 변수 내에서 요인의 수 결정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인 아이겐 값(eigenvalue)이 1이상인 기준을 추출하였다(우수명, 2006). 요인분석은 데이터 축소하여 4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4개의 요인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이다. 각 변수별 요인 값 중 .5 이하인 평등권1, 자유권1을 제거하였다. 전체항목 요인분석결과 Kaiser-Meyer-Olkin(KMO)은 1에 가까운 .843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근사 카이제곱 2261.753, 자유도 190,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의 적용은 적합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3>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인권의식	요인			
	1	2	3	4
평등권2	.660			
평등권3	.722			
평등권4	.745			
평등권5	.868			
자유권2		.645		
자유권3		.788		
자유권4		.699		
자유권5		.658		
생존권1			.648	
생존권2			.682	
생존권3			.576	
생존권4			.743	
생존권5			.815	
사회권1				.722
사회권2				.674
사회권3				.605
사회권4				.769
사회권5				.656
고유값	9.666	2.010	1.574	1.093
분산비율	48.331	10.049	7.868	5.467
누적비율	48.331	58.380	66.247	74.7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비슷한 항목들을 사용하여 여러 번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같은 값이 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 항목들을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설문항목들 간에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인권감수성 중 상황지각능력 .727, 결과지각능력 .777, 책임지각능력 .628이며, 인권의식 중 평등권 .798, 자유권 .801, 생존권 .862, 사회권 .862로 나타났다.

<표 4-4> 신뢰도 분석

변수		Cronbach's-α	문항수
인권감수성	상황지각능력	.727	5
	결과지각능력	.777	5
	책임지각능력	.628	5
	전체	.870	15
인권의식	평등권	.798	5
	자유권	.801	5
	생존권	.803	5
	사회권	.862	5
	전체	.937	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기술통계

1.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인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에 대한 평가의 개괄적 확인을 위하여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균 산출 결과 인권감수성 중 상황지각능력은 평균 2.51, 결과지각능력은 2.61, 책임지각능력은 2.84이며, 인권의식 중 평등권은 4.62, 자유권은 4.54, 생존권은 4.51, 사회권은 4.46으로 산출되었다.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기술통계

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능력	0-5	2.51	1.40
결과지각능력	0-5	2.61	1.48
책임지각능력	0-5	2.84	1.46
평등권	1-5	4.62	0.50
자유권	1-5	4.54	0.49
생존권	1-5	4.51	0.43
사회권	1-5	4.46	0.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변수 특성별 차이분석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t-test와 함께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표 4-6>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변수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는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남자 M=2.47, 여자 M=2.54로 여자가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결과지각능력은 남자 M=2.40, 여자 M=2.75로 여자가 0.35정도 높았다. 책임지각능력은 남자 M=2.83, 여자 M=2.84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었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남자 M=4.60, 여자 M=4.64으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였으며, 자유권 역시 남자 M=4.54, 여자 M=4.55으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였다. 생존권은 남자 M=4.45, 여자 M=4.55이며, 사회권은 남자 M=4.40, 여자 M=4.50이었다. 전체적으로 인권의식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6>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상황 지각능력	남	2.47	1.43	-.292	.853
	여	2.54	1.38		
결과 지각능력	남	2.40	1.44	-1.361	.606
	여	2.75	1.50		
책임 지각능력	남	2.83	1.44	-.023	.827
	여	2.84	1.49		
평등권	남	4.60	0.54	-.618	.787
	여	4.64	0.47		
자유권	남	4.54	0.58	-.433	.738
	여	4.55	0.41		
생존권	남	4.45	0.54	-.088	.515
	여	4.55	0.32		
사회권	남	4.40	0.58	-1.307	.120
	여	4.50	0.40		

(2)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표 4-7>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의식 변수의 자유권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있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나머지 변수에서는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20대 M=2.15, 30대 M=2.55, 40대 M=2.58, 50대 M=2.50으로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왔고, 결과지각능력은 20대 M=2.57, 30대 M=2.68, 40대 M=2.62, 50대 M=2.48로 2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대와 50대는 낮게 나왔다. 책임지각능력은 20대 M=2.91, 30대 M=2.80, 40대 M=2.83, 50대 M=2.87로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20대 M=4.48, 30대 M=4.47, 40대 M=4.33, 50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4.22로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생존권과 사회권은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표 4-7>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post Hoc (Duncan)
상황 지각능력	20대=1	2.15	1.52	.393	.758	
	30대=2	2.55	1.42			
	40대=3	2.58	1.27			
	50대=4	2.50	1.54			
결과 지각능력	20대=1	2.57	1.62	.101	.960	
	30대=2	2.68	1.54			
	40대=3	2.62	1.36			
	50대=4	2.48	1.57			
책임 지각능력	20대=1	2.91	1.54	.028	.994	
	30대=2	2.80	1.47			
	40대=3	2.83	1.41			
	50대=4	2.87	1.57			
평등권	20대=1	4.48	0.46	1.706	.169	
	30대=2	4.47	0.72			
	40대=3	4.33	0.29			
	50대=4	4.22	0.21			
자유권	20대=1	4.52	0.32	3.021	.032*	2<1<3<4
	30대=2	4.40	0.69			
	40대=3	4.60	0.31			
	50대=4	4.73	0.28			
생존권	20대=1	4.47	0.22	2.076	.107	
	30대=2	4.41	0.60			
	40대=3	4.54	0.27			
	50대=4	4.66	0.27			
사회권	20대=1	4.33	0.36	2.640	.052	
	30대=2	4.34	0.65			
	40대=3	4.54	0.33			
	50대=4	4.60	0.36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표 4-8>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의 변수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는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기혼 M=2.64, 미혼 M=2.36, 결과지각능력은 기혼 M=2.66, 미혼 M=2.63, 책임지각능력은 기혼 M=2.92, 미혼 M=2.73으로 기혼자가 미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기혼 M=4.67, 미혼 M=4.56, 자유권은 기혼 M=4.60, 미혼 M=4.47, 생존권은 기혼 M=4.57, 미혼 M=4.42, 사회권은 기혼 M=4.56, 미혼 M=4.32로 기혼자가 미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4-8>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상황 지각능력	기혼	2.64	1.32	1.122	.172
	미혼	2.36	1.51		
결과 지각능력	기혼	2.66	1.41	0.095	.644
	미혼	2.63	1.53		
책임 지각능력	기혼	2.92	1.47	.730	.902
	미혼	2.73	1.48		
평등권	기혼	4.67	0.34	.702	.535
	미혼	4.56	0.65		
자유권	기혼	4.60	0.38	1.299	.062
	미혼	4.47	0.60		
생존권	기혼	4.57	0.29	1.527	.534
	미혼	4.42	0.55		
사회권	기혼	4.56	0.37	2.026	.061
	미혼	4.32	0.5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표 4-9>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 변수의 결과지각능력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있는 었다. Duncan의 사후분석결과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나머지 변수에서는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는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전문대 M=2.23, 대학교 M=2.46, 대학원 M=3.13으로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교, 전문대 순이었다. 책임지각능력은 전문대 M=2.46, 대학교 M=2.81, 대학원 M=3.42으로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교, 전문대 순이었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전문대 M=4.31, 대학교 M=4.39, 대학원 M=4.40으로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교, 전문대 순이었다. 자유권은 전문대 M=4.61, 대학교 M=4.52, 대학원 M=4.61로 전문대와 대학원이 동일하였으며, 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존권은 전문대 M=4.50, 대학교 M=4.51, 대학원 M=4.47로 대학교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문대, 대학원 순이었다. 사회권은 전문대 M=4.47, 대학교 M=4.44, 대학원 M=4.52로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문대와 대학교 순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9>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post Hoc (Duncan)
상황 지각능력	전문대=1	2.23	1.31	2.181	.117	
	대학교=2	2.46	1.42			
	대학원=3	3.13	1.23			
결과 지각능력	전문대=1	1.95	1.30	4.651	.011*	1<2<3
	대학교=2	2.61	1.51			
	대학원=3	3.40	1.12			
책임 지각능력	전문대=1	2.46	1.44	2.083	.129	
	대학교=2	2.81	1.46			
	대학원=3	3.42	1.42			
평등권	전문대=1	4.31	0.22	.217	.805	
	대학교=2	4.39	0.56			
	대학원=3	4.40	0.33			
자유권	전문대=1	4.61	0.29	.475	.623	
	대학교=2	4.52	0.54			
	대학원=3	4.61	0.32			
생존권	전문대=1	4.50	0.27	.078	.925	
	대학교=2	4.51	0.47			
	대학원=3	4.47	0.32			
사회권	전문대=1	4.47	0.31	.169	.844	
	대학교=2	4.44	0.53			
	대학원=3	4.52	0.39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직위에 따른 차이분석

<표 4-10>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직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 변수의 상황지각능력과 결과지각능력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있었다. 상황지각능력은 Duncan의 사후분석결과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원장과 부장, 팀장 그리고 기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나머지 변수에서는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책임지각능력은 원장 M=4.15, 사무국장 M=1.80, 부장팀장 M=3.07, 사회복지사 M=2.64, 기타 M=3.16으로 원장이 가장 높았으며, 부장팀장,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순이었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원장 M=4.35, 사무국장 M=4.30, 부장팀장 M=4.39, 사회복지사 M=4.42, 기타 M=4.26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장 높았으며, 부장팀장, 원장, 사무국장 순이었다. 자유권은 원장 M=4.70, 사무국장 M=4.85, 부장팀장 M=4.55, 사회복지사 M=4.47, 기타 M=4.68로 사무국장이 가장 높았으며, 부장팀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생존권은 원장 M=4.40, 사무국장 M=4.75, 부장팀장 M=4.56, 사회복지사 M=4.44, 기타 M=4.636으로 사무국장이 가장 높았으며, 원장이 가장 낮았다. 사회권은 원장 M=4.50, 사무국장 M=4.65, 부장팀장 M=4.55, 사회복지사 M=4.40, 기타 M=4.52로 사무국장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0> 직위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post Hoc (Duncan)
상황 지각능력	원장=1	3.95	0.82	3.278	.013*	2<4=5<3<1
	사무국장=2	1.50	1.29			
	부장팀장=3	3.09	1.29			
	사회복지사=4	2.28	1.37			
	기타=5	2.64	1.38			
결과 지각능력	원장=1	3.70	0.87	3.302	.013*	2<4<3=5<1
	사무국장=2	1.50	1.91			
	부장팀장=3	3.16	1.12			
	사회복지사=4	2.31	1.52			
	기타=5	2.99	1.38			
책임 지각능력	원장=1	4.15	0.87	2.232	.069	
	사무국장=2	1.80	1.48			
	부장팀장=3	3.07	1.32			
	사회복지사=4	2.64	1.48			
	기타=5	3.16	1.45			
평등권	원장=1	4.35	0.10	.570	.685	
	사무국장=2	4.30	0.20			
	부장팀장=3	4.39	0.29			
	사회복지사=4	4.42	0.62			
	기타=5	4.26	0.26			
자유권	원장=1	4.70	0.35	1.511	.203	
	사무국장=2	4.85	0.30			
	부장팀장=3	4.55	0.32			
	사회복지사=4	4.47	0.59			
	기타=5	4.68	0.25			
생존권	원장=1	4.40	0.40	1.581	.183	
	사무국장=2	4.75	0.30			
	부장팀장=3	4.56	0.16			
	사회복지사=4	4.44	0.52			
	기타=5	4.63	0.19			
사회권	원장=1	4.50	0.35	.771	.546	
	사무국장=2	4.65	0.47			
	부장팀장=3	4.55	0.39			
	사회복지사=4	4.40	0.56			
	기타=5	4.52	0.32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업무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표 4-11>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업무형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의식 변수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정규직 M=2.60, 계약직 M=2.23으로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결과지각능력은 정규직 M=2.52, 계약직 M=2.70으로 계약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책임지각능력은 정규직 M=2.85, 계약직 M=2.78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정규직 M=4.63, 계약직 M=4.60, 자유권은 정규직 M=4.60, 계약직 M=4.42, 생존권은 정규직 M=4.54, 계약직 M=4.43, 사회권은 정규직 M=4.52, 계약직 M=4.3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다소 높았다.

<표 4-11> 업무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상황 지각능력	정규직	2.60	1.33	1.443	.241
	계약직	2.23	1.52		
결과 지각능력	정규직	2.52	1.48	-0.613	.983
	계약직	2.70	1.45		
책임 지각능력	정규직	2.85	1.43	.252	.426
	계약직	2.78	1.57		
평등권	정규직	4.63	0.36	.372	.354
	계약직	4.60	0.74		
자유권	정규직	4.60	0.36	.270	.147
	계약직	4.42	0.70		
생존권	정규직	4.54	0.30	1.932	.143
	계약직	4.43	0.63		
사회권	정규직	4.52	0.39	1.333	.124
	계약직	4.31	0.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사회복지 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표 4-12>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사회복지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 변수의 결과지각능력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있었따. Duncan의 사후분석결과 3년 이하와 10년 미만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나머지 변수에서는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3년 이하 M=2.37, 5년 이하 M=2.27, 10년 미만 M=2.38, 10년 이상 M=3,14로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결과지각능력은 3년 이하 M=2.44, 5년 이하 M=1.97, 10년 미만 M=2.82, 10년 이상 M=3.15로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책임지각능력은 3년 이하 M=2.84, 5년 이하 M=2.46, 10년 미만 M=2.82, 10년 이상 M=3.26으로 1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3년 이하 M=4.26, 5년 이하 M=4.52, 10년 미만 M=4.36, 10년 이상 M=4.39로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변수는 유사하였다. 자유권 3년 이하 M=4.64, 5년 이하 M=4.45, 10년 미만 M=4.57, 10년 이상 M=4.49로 3년 이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생존권과 3년 이하 M=4.57, 5년 이하 M=4.41, 10년 미만 M=4.52, 10년 이상 M=4.52로 3년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권은 3년 이하 M=4.53, 5년 이하 M=4.39, 10년 미만 M=4.39, 10년 이상 M=4.55로 1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와 10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2> 사회복지 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post Hoc (Duncan)
상황 지각능력	3년 이하=1	2.37	1.38	2.498	.062	
	5년 이하=2	2.27	1.43			
	10년 미만=3	2.38	1.47			
	10년 이상=4	3.14	1.14			
결과 지각능력	3년 이하=1	2.44	1.43	3.755	.013*	2<1=3<4
	5년 이하=2	1.97	1.66			
	10년 미만=3	2.82	1.45			
	10년 이상=4	3.15	1.14			
책임 지각능력	3년 이하=1	2.84	1.39	1.453	.230	
	5년 이하=2	2.46	1.47			
	10년 미만=3	2.82	1.49			
	10년 이상=4	3.26	1.46			
평등권	3년 이하=1	4.26	0.21	1.438	.235	
	5년 이하=2	4.52	0.84			
	10년 미만=3	4.36	0.44			
	10년 이상=4	4.39	0.30			
자유권	3년 이하=1	4.64	0.26	.954	.417	
	5년 이하=2	4.45	0.78			
	10년 미만=3	4.57	0.42			
	10년 이상=4	4.49	0.40			
생존권	3년 이하=1	4.57	0.22	.814	.489	
	5년 이하=2	4.41	0.75			
	10년 미만=3	4.52	0.31			
	10년 이상=4	4.52	0.26			
사회권	3년 이하=1	4.53	0.31	1.107	.349	
	5년 이하=2	4.39	0.75			
	10년 미만=3	4.39	0.42			
	10년 이상=4	4.55	0.37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8) 현 근무지 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표 4-13>에서와 같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사회복지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 변수의 상황지각능력에서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있었다. Duncan의 사후분석결과 5년 이하와 10년 이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3년 이하와 10년 미만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나머지 변수에서는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상황지각능력은 3년 이하 M=2.07, 5년 이하 M=3.11, 10년 미만 M=2.68, 10년 이상 M=3,33으로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3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결과지각능력은 3년 이하 M=2.31, 5년 이하 M=2.82, 10년 미만 M=2.92, 10년 이상 M=3.23으로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3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책임지각능력은 3년 이하 M=2.61, 5년 이하 M=3.22, 10년 미만 M=2.75, 10년 이상 M=3.63으로 1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에서 평등권은 3년 이하 M=4.30, 5년 이하 M=4.56, 10년 미만 M=4.37, 10년 이상 M=4.23으로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변수는 유사한 결과였다. 자유권 3년 이하 M=4.61, 5년 이하 M=4.44, 10년 미만 M=4.53, 10년 이상 M=4.37로 3년 이하가 가장 높았다. 생존권과 3년 이하 M=4.53, 5년 이하 M=4.38, 10년 미만 M=4.58, 10년 이상 M=4.60으로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권은 3년 이하 M=4.46, 5년 이하 M=4.39, 10년 미만 M=4.49, 10년 이상 M=4.63으로 1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3> 현 근무지 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post Hoc (Duncan)
상황 지각능력	3년 이하=1	2.07	1.43	5.625	.001**	1<3<2=4
	5년 이하=2	3.11	1.27			
	10년 미만=3	2.68	1.17			
	10년 이상=4	3.33	1.02			
결과 지각능력	3년 이하=1	2.31	1.54	1.945	.125	
	5년 이하=2	2.82	1.62			
	10년 미만=3	2.92	1.09			
	10년 이상=4	3.23	1.29			
책임 지각능력	3년 이하=1	2.61	1.53	1.984	.119	
	5년 이하=2	3.22	1.25			
	10년 미만=3	2.75	1.34			
	10년 이상=4	3.63	1.89			
평등권	3년 이하=1	4.30	0.51	2.227	.088	
	5년 이하=2	4.56	0.65			
	10년 미만=3	4.37	0.22			
	10년 이상=4	4.23	0.08			
자유권	3년 이하=1	4.61	0.51	1.217	.306	
	5년 이하=2	4.44	0.52			
	10년 미만=3	4.53	0.38			
	10년 이상=4	4.37	0.46			
생존권	3년 이하=1	4.53	0.49	1.514	.214	
	5년 이하=2	4.38	0.44			
	10년 미만=3	4.58	0.20			
	10년 이상=4	4.60	0.00			
사회권	3년 이하=1	4.46	0.53	.532	.661	
	5년 이하=2	4.39	0.49			
	10년 미만=3	4.49	0.40			
	10년 이상=4	4.63	0.29			

**p<.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상관관계 분석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지각능력은 결과지각능력과 책임지각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권의식의 하위요인인 평등권은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상관관계

변수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1	2	3	4	5	6	7
인권 감수성	1. 상황지각능력	1						
	2. 결과지각능력	.753**	1					
	3. 책임지각능력	.726**	.766**	1				
인권 의식	4. 평등권	-.024	-.020	.029	1			
	5. 자유권	.053	.048	.090	.685**	1		
	6. 생존권	-.058	-.009	-.004	.875**	.733**	1	
	7. 사회권	-.063	-.049	-.009	.728**	.582**	.762**	1

**p<.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가설의 검증

1.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인으로, 평등권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0.7%(R^2=.007)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β		
상수	4.617	.099		46.834	.000***
인권감수성	-.024	.051	-.071	-.469	.042*
R^2=.007, $Adj\ R^2$=-.016, F=.825					

*p< .05, ***p< .001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인으로, 자유권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6>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0.9%(R^2=.009)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6>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β		
상수	4.466	.096		46.360	.000***
인권감수성	-.015	.050	-.047	-.308	.037*
R^2=.009, $Adj\ R^2$=-.014, F=.754					

*p< .05, ***p< .001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인으로, 생존권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7>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0.7%(R^2=.007)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 중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β		
상수	4.527	.084		54.071	.000***
인권감수성	.015	.043	.052	.345	.004**
R^2=.007, $Adj\ R^2$=-.015, F=.807					

**p< .01, ***p< .001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인으로, 사회권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8>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0.8%(R^2=.008)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 중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β		
상수	4.492	.095		47.172	.000***
인권감수성	-.018	.049	-.055	-.366	.003**
R^2=.008, $Adj\ R^2$=-.015, F=.797					

**p< .01, ***p< .001

2.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평등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4.7%이며, 2단계에서는 16.9%, 3단계는 16.8%로 산출되었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310,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평등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9> 인권감수성과 평등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독립	인권감수성	.299	2.213**	.308	2.333**	.314	2.406**
조절	인권교육			.308	3.719***	.303	3.702***
상호작용	인권감수성*인권교육					.310	3.808***
R^2			.047		.169		.168
R^2변화량					.122**		-.001
F			2.157		3.688**		4.293**

**p< .01, ***p< .00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평등권 간 인권교육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방향성을 확인한 결과 <그림 4-1>과 같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집단보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작았다. 즉,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인권감수성이 높아서 평등권이 덜 저하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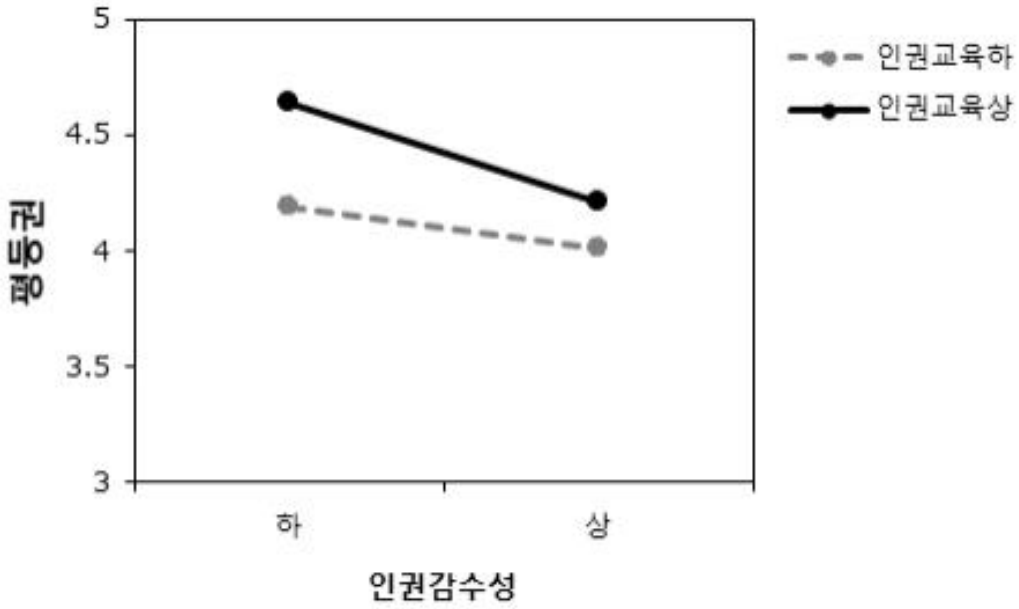

<그림 4-1> 인권감수성과 평등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자유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인권의식의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3.5%이며, 2단계에서는 7.1%, 3단계는 7.1%로 산출되었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11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자유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0> 인권감수성과 자유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독립	인권감수성	-.135	-.988	-.127	-.914	-.131	-.956
조절	인권교육			-.110	-1.257	-.111	-1.269
상호작용	인권감수성*인권교육					-.112	-1.301
R^2		.035		.071		.071	
R^2변화량				.036		.000	
F		1.576		1.389		1.63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생존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인권의식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3.9%이며, 2단계에서는 15.5%, 3단계는 15.5%로 산출되었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283, p<.01)는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생존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1> 인권감수성과 생존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독립	인권감수성	-.279	-2.051*	-.341	-2.562*	-.344	-2.642**
조절	인권교육			-.278	-3.322**	-.278	-3.345**
상호작용	인권감수성*인권교육					-.283	-3.435**
R^2		.039		.155		.155	
R^2변화량				.116		.000	
F		1.769		3.327**		3.908**	

*p< .05, **p< .0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생존권 간 인권교육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방향성을 확인한 결과 <그림 4-2>와 같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집단보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생존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작았다. 즉,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인권감수성이 높아서 생존권이 덜 저하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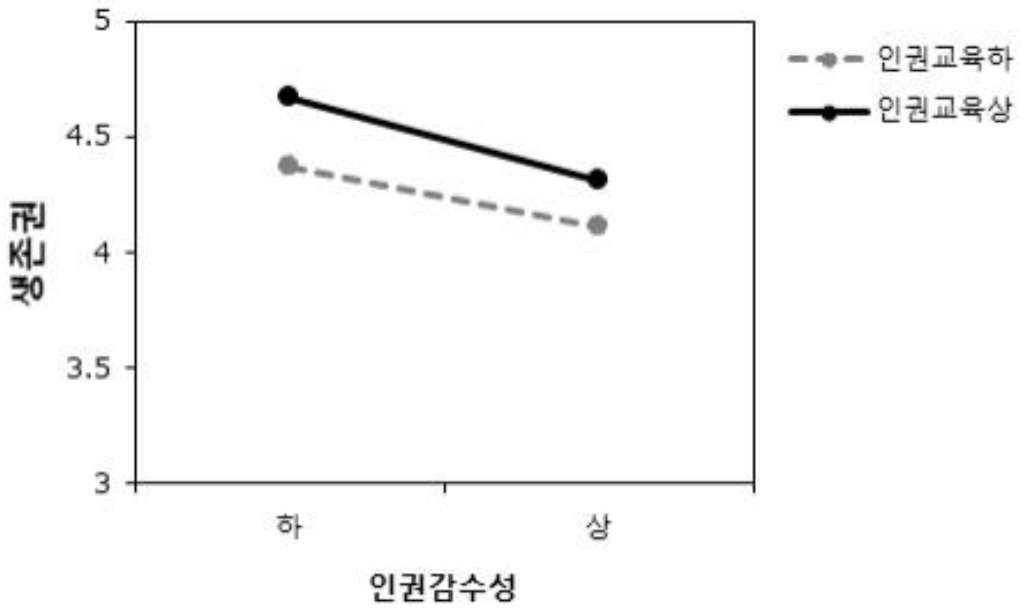

<그림 4-2> 인권감수성과 생존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사회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인권의식의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4.0%이며, 2단계에서는 13.5%, 3단계는 12.9%로 산출되었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 =-.305,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사회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2> 인권감수성과 사회권 간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독립	인권감수성	-.314	-2.314*	-.376	-2.794**	-.334	-2.747**
조절	인권교육			-.305	-3.615***	-.306	-3.633***
상호작용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305	-3.693
R^2		.040		.135		.129	
R^2변화량				.095**		-.004	
F		1.819		2.841**		6.448***	

<표 4-23> 가설검증 결과

구분	내용	결과
가설1	1-1 인권감수성은 평등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인권감수성은 자유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인권감수성은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인권감수성은 사회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2-1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채택
	2-2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자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기각
	2-3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채택
	2-4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기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5 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의 논의

1. 가설검증 결과

(1)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인으로, 인권의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7%(R^2=.007)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9%(R^2=.009)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평등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7%(R^2=.007)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8%(R^2=.008)이며,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의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서지숙(2017)에 의하면 인권의식 하위요인 중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인권감수성의 3개 영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 인권감수성 하위영역 중 결과지각이 정(+)의 영향을 갖고 있었으며, 생존권은 책임지각에서 정(+)의 영향을 갖고 있었다.(서지숙, 2017) 그러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연구 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는 정선영(2006)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선영(2006)의 연구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일반인의 인권감수성보다 20점 높았는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가 일반인에 비해 인권관련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더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정선영, 2006). 하지만 김혜련·정명숙(2017)은 장애인시설 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 증진에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과지각능력과 상황지각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인권교육의 조절효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등권은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4.7%이며, 2단계에서는 16.9%, 3단계는 16.8%였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310, $p<.001$)는 정(+)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평등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유권은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3.5%이며, 2단계에서는 7.1%, 3단계는 7.1%였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11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자유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존권은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3.9%이며, 2단계에서는 15.5%, 3단계는 15.5%였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283, $p<.01$)는 정(+)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생존권에서 인권교육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회권은 1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4.0%이며, 2단계에서는 13.5%, 3단계는 12.9%였다. 3단계에서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 상호작용 변수(β=-.305,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사회권에서 인권교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선영(2006)은 인권교육 경험 유·무가 인권감수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인권교육의 효율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세민(2009) 역시 인권감수성 향상에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규란(2012)은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장바론(2016)도 인권교육 유무 집단 간의 인권감수성 여부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유정 등(2013)은 인권의식 함양에 인권교육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김혜련·정명숙(2017)은 인권교육이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는 평등권과 생존권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 비교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권교육을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웅섭(2007)과 박정선(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인권관련 연수가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 인식에 주요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요인이 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라 하였기에 인권교육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준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인권감수성 지표는 민감성 측정과 도덕적 태도에서 나온 척도로, 실제 응답자의 지각보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권상황만을 측정도구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권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장애인 인권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본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권교육 경험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되었으며, 종사자의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의의 대상자를 확보하였으므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것을 일반화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도구에 대한 측정타당도에 한계점이 있다. 인권감수성 설문지 내용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개발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제가 대부분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학대행위, 장애인인권보호 실천에 관한 연구들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서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인적 요인과 기관의 근무환경,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이 기관이나 개인 특성 외에 다수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요소들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순옥, 200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실태와 욕구 조사연구: 강원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지영, 2002, “인권에 대한 능지능력과 정서적 공감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감영숙, 20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수, 2013, “노인의 인권의식이 사회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옴부즈맨 집단과 여가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수, 2012, “보육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리더십에 따른 보육교사의 만족도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옥·정진경·김희성, 2008,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연구-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3집(2008년 6월), pp.389-422.

김미옥, 2008, “거주지원서비스에서의 이용자 참여의 쟁점과 현실, 장애인거주지원서비스의 최근 쟁점과 정책 및 실천과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수현, 2019,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희, 2004,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진, 2007. “사회적지지가 시설거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련·정명숙, 2017, “인권교육프로그램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72(2), pp.275-297.

김혜정, 2001,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인복지법, 법률 제16403호(2019).

박상준·임태승, 2010,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인권판단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 인권교육연구 pp.39-58

박정선, 2007,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 인식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기동, 2012, “사회적지지와 가족지지가 실직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경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18, "2018 [제3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서지숙, 20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직무만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웅섭, 2007, “초등교원의 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춘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연경,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성남, 2008,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당진지역을 중심으로-”,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찬영, 2005,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의 이해”, 복지동향, Vol.79. pp.4-7.

윤지용, 2012, “노인과 부양자가 지각한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규란, 2012, “정신보건 전문요워들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세민, 2009, “ 청소년지도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학, 2017, "지적장애학생의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바론, 2016,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승진, 201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이 인식하는 학대행위와의 관계”,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병성, 2002, “봉사학습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이타행동 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정선영, 2006,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59-87,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선영, 공상길, 임은경, 천덕희, 오영림(2010),“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23. No.8. pp.59-87.

전지영, 201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아동인권 인식과 이행실천수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청자, 2019,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장애인 학대에 미치는 영향",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윤정, 2006,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 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한수,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영남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유정·채은희·양어진, 201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pp.83-9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할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질문은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활동을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결과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07월

연구자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임수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다음은 인권 관련 사례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1-1. 가족회의

정○○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65세로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줄곧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왔다. 아들 내외는 효자로 소문날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여생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할아버지로부터 얼마 전에 청혼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재혼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자식들은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할머니는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할머니가 재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3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할머니가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	가족들의 결정에 따르시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 학교

최근에 부녀회장인 소○○씨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자폐아 학교로 인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일반 학부모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꺼려하여 땅값과 집값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구경만 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자는 의견에 과반수이상이 동의했다. 어떤 주민은 당장 시위를 하러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Ⅰ. 위 사건을 지켜 본 이웃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7	지역 주민들 다수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인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만약 주민들의 반대로 자폐아 학교의 인가가 취소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9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외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1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막자는 대다수의 결정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감원 대상

○○씨는 S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 전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제품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사내에서 만난 동료직원과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씨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5-600명의 사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상사는 ○○씨를 자리로 부른 후 현재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남자 사원보다는 ○○씨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직을 권한다. 상사와의 면담 후 자리로 돌아온 ○○씨는 고민에 빠진다.

Ⅰ. “위의 감원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3	남성 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위와 같은 감원이 실시될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5	남성 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 경제의 충격이 덜 심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 직원이 일할 권리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고민에 빠진 ○○씨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7	회사 경영난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 원칙에 항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4. 의사의 고민

신○○씨는 희귀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동안 신씨를 담당해 왔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신씨가 임신할 경우 유전병이 태아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동일한 병을 가진 장애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신씨는 성에 대한 관념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부족하여, 신씨의 부모는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신씨의 부모는 차라리 딸에게 불임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수술 부탁을 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9	동일한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신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의 일부를 수술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Ⅱ. 의사가 불임수술을 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1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녀를 낳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3	자녀의 불행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을 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을 부모에게 주지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료자 명단

한○○씨는 시립 정신병원의 병원장이다. 얼마 전 정신질환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은 후로, 한씨는 최근 2년간 정신과 진료를 10회 이상 받았던 진료자 명단을 뽑아 달라는 경찰서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수시 운전면허 적성 시험을 보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탁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받은 한씨는 진료자 명단을 통보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5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진료기록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Ⅱ. 한씨가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7	교통사고 위험인자를 가려내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정신질환자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9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진료기록을 통보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진료 기록을 통보할 수 없다고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다음 항목은 **인권의식**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귀하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대로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No	문 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성적표현을 하는 것은 시설 종사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용자 중 여성 이용자에게 남성 이용자의 성적폭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①	②	③	④	⑤
3	치매노인, 중증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들의 배회공간을 최대한 좁게 해서 시설종사자가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시설에서의 생활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집단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상, 취침, 일괄 소등은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같은 공간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내의 다른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종사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이용자의 재활 또는 장애에 대한 점검보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모시고 문을 잠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가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입원이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o	문 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	시설 내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보호자가 있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재활이나 프로그램을 요구할 때, 지자체(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이용자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용자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조용히 지내는 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응급상황에 필요하다면 전문의 진단 없이도 긴급하게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용자가 익숙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때로 이용자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게는 만나게 할 길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빨래를 개도록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므로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17	이용자가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더 조사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추어주기는 어려워 지금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며 더 만들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용자들이 봉사자들에게 안기고 싶어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일이므로 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용자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바르지 않는 행동에 대해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다음 항목은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곳에 ∨표 해주세요.

1. 귀 기관에서는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주 1회 ② 월 1회 ③ 분기 1회 ④ 반기별 1회

⑤ 년 1회 ⑥ 기타( )

2. 귀 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4.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권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② 장애인 학대와 학대 유형
③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 방안 ④ 장애인 인권 옹호 실천 방안

5.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할 때 주된 교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혼합식(강의식+토론식)
④ 기타(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다음 항목은 선생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4.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④ 대학교 ⑤ 대학원

5.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원장 ② 사무국장 ③ 부장, 팀장 ④ 사회복지사 ⑤ 기타( )

6. 근무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파트타임 ④ 기타( )

7. 사회복지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영역 총 근무기간(개월), 현 근무지 근무 기간(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